

제356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0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5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6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6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6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박덕흠 · 원유철 · 강석호 · 김광립 · 박성중 · 이학재 · 주호영 · 박맹우 · 김재원 · 경대수 · 이철우 · 김정재 의원 발의) 6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정갑윤 · 도종환 · 정인화 · 윤영일 · 안규백 · 손혜원 · 윤후덕 · 이언주 · 박주선 의원 발의) 7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7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7
7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이학영 · 이동섭 · 민병두 · 김종민 · 김해영 · 윤호중 · 안민석 · 이춘석 · 유동수 · 안규백 · 정종섭 · 설훈 · 신창현 · 이인영 · 김정협 의원 발의) 13
8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6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민병두 · 제윤경 · 김동철 · 조배숙 · 이태규 · 이종걸 · 송희경 · 이동섭 · 주승용 · 박선숙 의원 발의) 16
14.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신용현 · 김광수 · 박준영 · 김삼화 · 김정진 · 황주홍 · 이동섭 · 김종희 · 이언주 의원 발의) 17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 · 김해영 · 남인순 · 장정숙 · 김병욱 · 박선숙 · 박정 · 윤관석 · 김영진 · 신창현 · 김정우 · 전해숙 의원 발의) 17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신용현 · 김광수 · 박준영 · 김삼화 · 김정진 · 황주홍 · 이동섭 · 김종희 · 이언주 의원 발의) 17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 · 신용현 · 김광수 · 박

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희·이언주 의원 발의)	17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
2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김무성·유승민·이원욱·김관영·김영우·하태경·이대규·김수민 의원 발의)	30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최인호·박재호·김현권·김현아·이개호·임종성 의원 발의)	30
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학재·이완영·정병국·김영우 의원 발의)	30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	30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정우·신창현·설훈·송옥주·김경협·서영교·안호영·이찬열·조승래 의원 발의)	30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정우·주승용·한정애·신창현·윤관석·임종성·안규백·안호영·이원욱 의원 발의)	30
3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민홍철·윤관석·정성호·이춘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30
3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0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4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4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4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35
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7.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욱·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	35
4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미혁·이학영·인재근·박홍근·이원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	35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5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5
5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6
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6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6
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36
6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6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6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김동철·김삼화·정인화·김종희·이종걸·이용주 의원 발의)	37
6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6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서영교·김삼화·천정배·김학용·백승주·경대수·이철희·이종명·김병기·이용호·송기석·유성엽·권은희·장정숙·신용현·최경환(국)·박주선·황주홍·최도자·김종희·조배숙·장병완·김광수·이찬열·최명길·오세정·이용주·김종로·김경진·박준영·박선숙·김수민·손금주·김종대 의원 발의)	37
6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7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배·이양수·문진국·김진태·김명연·이채익 의원 발의)	43
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43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희·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43
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3
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3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박정 의원 발의)	43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3
7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3
8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48
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48
8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여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48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박정·김정우·김종민·윤후덕·홍의락·정성호·이개호·윤관석·박광온 의원 발의)	48

- 8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 48
-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8
- 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중·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48

(09시38분 개의)

○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 미상정 안건 87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경찰청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참석으로 민갑룡 차장이 대리출석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박덕흠·원유철·강석호·김광림·박성중·이학재·주호영·박맹우·김재원·경대수·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다른 일정이 있다 해서 먼저 심사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국세물납된 증권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국

세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물납된 증권의 처분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의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므로 자료제출 요청의 주체와 상대방을 명확히 하였고, 자료제출 협조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없으면 이석하셔도……

아, 있습니까?

정갑윤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설 잘 쇠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정갑윤 위원 이번 설 연휴에 혹시 국민들 좀

만나 보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일부 만나 보았습니다.

○정갑윤 위원 제가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재래시장 등 많은 국민들을 만나 보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지금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애초에 결정할 때 경제수장인 기재부장관은 참여 안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저도 참여하지요.

○정갑윤 위원 혹시 그때 참여해서 기재부장관으로서 최저임금 결정에 의견을 개진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충분히 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면 7530원, 16.4%가 결정되는 데는 기재부장관이 역할을 했다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결정이 된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16.4%로 많이 오르게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혹시 있을 수 있는 대량 고용해고라든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결정에 주도를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앞으로 경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은 기재부장관이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결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잘되었든 못되었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모든 결과는 기재부장관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장관이 직접 참여 안 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기재부장관이거든요.

요. 또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혹시 과연 지금 현재 이대로 정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다니면서 국민 설득하고 도로에서 서명 받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일단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료 문제라든지 간접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보완 대책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윤 위원 자꾸 거기다 정부 지원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부총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외교부장관 계신가요? 오셨는가요? 아직 안 오셨지요?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연주·박주선 의원 발의)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09시45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동 계획의 수정 시 국회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 홍보방안 및 국민참여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례 등에 비추어 기본계획의 수정이라는 용어보다는 기본계획의 변경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통일의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주관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지원 책무 등을 강화하며 통일관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 체계에 배치되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관님, 의사일정 제3항 관련인데 통일관이라는 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일관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각 지자체에, 지방 큰 광역시 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지금 통일부 예산으로 통일관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일부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관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권성동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관은 없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일관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현안질의 3분입니다.

○윤상직 위원 3분까지 할 것은 없고요.

아까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도 됩니까마는 국가가 먼저입니까, 민족이 먼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썬요……

○윤상직 위원 지금 우리 통일정책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먼저입니까? 대한민국이 먼저입니까, 한민족이 먼저입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만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로서 지금 일차적으로 판단은 둘 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중요하지만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도 아마 제가 질문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우려의 가장 근저에는 대한민국이 먼저냐 한민족이 먼저냐는 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확실하게 답

변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서는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우리의 시장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성호 위원** 이 핵심이 결국은 경원선이라든가 금강산선 그다음에 동해선, 이게 남북 철도 연결하는 게 핵심 사업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경원선 사업 같은 경우 2015년도 8월에 전임 대통령 때 기공식 할 때 당시 야당 의원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갔습니다, 저희 지역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중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경원선을 우리 측 지역까지 복구하는 공사는 실제로 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올해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였고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군사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또는 환경부 또 사업해야 되는 국토부, 이게 다 부처 간 협의가 굉장히

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본적으로 저희 통일부가 전체적으로는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사항을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공사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정도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이게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 과정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사업보다는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주변 국가들과 특히 북방경제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관하는 위원회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하여튼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시켜 주시고요. 이것은 재원 확보 문제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기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번에 사업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면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부처 간 협의도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 또 재원조달 문제도 통일부가 어쨌든 재원을 갖고 있으니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 주시고요.

경기 북부가 철원이든 연천군이든 동두천이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성호 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국의 탈북 여종업원 13명 북에 송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전혀 그런 것을 검토한 적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전혀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그때 남북 고위급회담 할 때 바로 처음에 제대로 확실하게 얘기를 못 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떤 말씀이신지……

○**김진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산가족과 관계에 대해서 북쪽에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에서 꺼냈습니다.

○**김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우리 남쪽에 자유의사로 와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북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검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게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왜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지요?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주무부처 장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김일성가면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미 그것은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것을 북한 김일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통일부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 사진 봤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진태 위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김일성하고 비슷하다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북한에 있는 갖가지 여러 대형 벽화니 이런 그림들에서 이게 김일성 젊었을 때를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이 아니라고 그것을 대변을 해 주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한테도 확인을 해 봤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진태 위원** 그러면 이것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막 이렇게 찢어 버려도 되는 거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진태 위원** 이것 당연히 찢어 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진태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동** 정갑윤 위원 하고 다시 더 기회를 드릴게요.

○**김진태 위원** 하는 김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안 돼요.

자,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국가가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라는 질문에 장관께서 처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셨지요,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갑윤 위원** 장관은 어느 나라의 장관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정갑윤 위원**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관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장관은 과연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는 얘기가 자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태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가의 장관이지 우리 민족의 장관이

까? 장관직을 내려놓고 하세요, 장관직을 내려놓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처음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한 취지는 그냥 단순히 국가나…… 아까 위원님께서서는 질문한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저는 국가, 민족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지금까지 깊게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 답변에서 제가 분명히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많은 국민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군사훈련은 재개하는 쪽으로 군사 당국에서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혹시 장관께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현재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난 1월 달에 그에 대한 답변도 견해도 어정쩡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은 대한민국 장관이나 북한 대변인이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정말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말씀 주신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근거 없이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갑윤 위원** 조금 전 윤상직 위원 질문에 첫 답변하는 자세가…… 그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일반 국민들 같으면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만 장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왕좌왕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통탄해 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꼭 북한 대변인으로서 답변을 한다고……

○**정갑윤 위원**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동료 위원이 질의시간을 얻어서 발언할 때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거나 질의시간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김진태 위원께 추가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번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등 일체 와 가지고 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현재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차적으로 추산해서 의결한 금액은 29억 원 정도입니다.

○**김진태 위원** 29억을 썼네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실제 정산하게 되면 그것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보게 되면.

○**김진태 위원** 북한 선수가 몇 명 참가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선수는 22명이 왔습니다. 선수, 코치 등 선수단이 46명이 왔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응원단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응원단은 230명 정도 왔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공연단은?

○**통일부장관 조명균** 130명 정도 왔습니다.

○**김진태 위원** 본래 참석할 수 있는 선수 2명인가 되는 데다가 억지로 단일팀 만들어 가지고 10명, 20명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응원단하고 무슨 공연단하고 하는 데다가 우리 국민 혈세를 29억이나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쓴 거예요, 어느 기금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아까 무슨 김일성 가면이니 이런 것 하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그 사람들, 북한에다가 대고 ‘이것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금방 ‘김일성 가면 아니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진태 위원** 우리가 언제 장관보고 그 말에 동의를 하나, 안 하나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웃었어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참가하는 것 좋아, 그런데 그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사람들 와 가지고 경비를 온통 국민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상직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통일부장관, 북한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당에서 한 것 아닙니다.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세요. 왜 항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받아들이겠다 정도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우리가 북한 대변인이라고 대놓고 한 것 아닙니다. 언론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제가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강릉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 경기장을 좀 다녀 봤는데 북한 응원단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과거 부산아시안게임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산아시안게임 때는 호기심만 또 북한 응원단들이 오면 평화가 보장되는 것으로 믿은 국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현장에서 본 느낌은 관객들이 북한 응원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라는 생각

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 응원단이 남녀가 짝을 이뤄서 하는 페어 스케이팅을 하는 데 왔어요, 북한 선수가 출전하니까. 그것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좌석들 차지하고 있다가 그 선수 경기가 끝나니까 다 가 버려. 또 아이스하키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남자팀 아이스하키 하는 데도 응원해 주러 또 왔더라고요. 잠시 앉았다 가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텅 비니까 경기장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 들어오게끔 해 주고…… 또 일반 사람들 오면 군데군데 비니까 경기장 전체적으로 보면 관객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밀집돼 앉았다가 가 버리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 시작하면서부터 북한 뉴스만 나오니까 평창과 강원도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평창은 사라지고 평양만 남았고 강원도의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려야 되는데 강원도의 문화는 사라지고 북한의 문화·예술만 부각이 되었어요. 개최지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 개최지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장평화공세에 우리가 그냥 호응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리고 돈을 27억이나 쓰면서 이게 과연 정말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이 안 돼요, 관광이.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입장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다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왔다, 곧 온다, 저희는 절대 이렇게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번 북한 대표단 참가를 계기로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IOC가 추구했던 평화올림픽으로서 치러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명심을 하면서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를 계기로 마련된 이 작은 불씨를 저희가 계속 이어 나가고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죄송한데 외교부장관이 지금 바로 법안심사를 마쳐야 대통령 주재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이학영·이동섭·민병두·김종민·김해영·윤호중·안민석·이춘석·유동수·안규백·정중섭·설훈·신창현·이인영·김경협 의원 발의)

8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9항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 처리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외교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장관님, 지난번 기자 폭행범 중국에서 잡았다고 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까지 조사 중인 걸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구속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폭행범이 구속됐다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구속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언제 구속됐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구속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확실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입

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중국 공안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사건이 난 당일 날 우리가 외교부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직후에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 이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것 엄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계속 중국 당국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계속 누가, 어떤 식으로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사관을 통해서 조력하는 우리 영사 측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얼마나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환한 데다 꺼내 놓고…… 이것 언제 잡았다고, 무슨 조사 중이라고 보도된 적이나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도 또 무슨 상대방 입장만 배려하는 것 같고.

이번에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대통령하고 펜스 미국 부통령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면담과 만찬회동이 있으셨고요.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만남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은 몇 번 만났지요? 김영남하고 김여정 몇 번 만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는 세 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무슨 세 번이에요? 보도된 것만 해도 지금 네 번, 다섯 번까지 나왔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여러……

○**김진태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걸 은근슬쩍……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북한 김영남하고 동선 겹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만찬석상에서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의전 사항에 대해서는 외

교부에서 안을 드리고 마지막은 청와대 의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만……

○**김진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쾌해서 금방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키워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된 바와는 다릅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중국 관련 얘기인데요.

장관님, 이번 평창올림픽에 중국에서는 누가 온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정 상무위원께서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오셨습니다.

○**오신환 위원** 중국의 권력 서열 7위 정도 되는가 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중국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또 중국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관심이 좀 저조한…… 이런 외교적 문제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시 주석의 특사로 오신 분이기에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분이 오신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권력 서열이 1위이든 2위이든 다 특사로 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래도 아베 총리가 왔고 미국의 경우도 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다소 소홀한 느낌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가 된 게 지금 어느 정도 지났지요? 언제 임시 배치가 됐지요, 작년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작년 8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사드 문제 갈등은…… 지금 3불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과 사드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완전 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은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서 거두어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요. 최종 결정은 배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요. 또 우리 국내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10월 31일 협의 내용의 결과를 보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다방면에서 정상화시킨다 하는 게 합의 내용이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또 재확인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서는 사드 배치는 국가적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그로 인해서 계속 경제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강하게 항의하거나……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53% 초고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사드 배치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 있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10월 31일 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국민 방문 이후로 정부 당국자 차원에서는 다양한 면에서 또 다방면에서 대화가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경제공동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북경을 다녀오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오셨습니다.

○오신환 위원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초고율

관세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지요. 중국에는 그렇게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는데 왜 다른 입장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로 인해서 지금 관세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동맹은 견고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균열이 없다라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외교부장관, 안보하고 통상이 별개입니까, 별개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관계는 다방면에 있어서 안보는 물론이고 또 경제 통상 면에 있어서도 긴밀한 동맹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대통령은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슈가 분야별로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이슈 따로, 큰 틀에서는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총론과 각론이 같이 가는 거지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그것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미국의 대한 무역조치에 대해서 중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실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통상을 담당하시는 산자부나 통상교섭본부……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정 기능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제가 세부사항까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 안보와 통상이 별개예요, 별개 아니에요? 별개 아니라면서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틀에서는……

○윤상직 위원 별개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별개일 수가 없겠지만 이

슈 자체는 분야별로 서로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이슈별로라니요? 지금 이 미국의 대한 무역조치, 통상압력 이런 것들이 그냥 통상 따로 안보 따로 그런 개념에서 보세요?

그러면 강 장관, 한번 우리 외교 통상 역사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FTA는 많은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었고……

○**윤상직 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노무현 정부 때 하도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미 국무부에서 FTA를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으셨고요. 그때도 한미 외교 통상 관계가 너무나도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 분리되는 것 아닙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제대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대한 무역조치에 대해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맞춰서 중국하고 경제동맹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미국과의 안보동맹도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이슈마다 다르다? 이슬비에 속옷 젖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드려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의 의견 잘 감안해서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장관이 됩니까? 직을 걸고 하실 말씀 하셔야지요, 대통령께. 장관이 안 보이잖아요.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이춘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 87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원만히 진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법사위가 개시된 지가 1시간 가까이 되는데 법안 딱 8개 통과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도 이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질의해서 정말 이게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계속 끄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답게

법안 위주로 하시고 정말 현안은 필요 한도 내에서 하시지 장관들 불러 놓고 다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법안심사 위주로 질의를 더 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는 짧게 그리고 좀 골고루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춘석 위원님이 법사위에 제일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춘석 위원님께서 야당 하실 때는 야당 위원들이 다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원래 국회는 야당을 위한 자리지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역지사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위원** 법안 할 때는 하루에 한 세 번까지만 발언하기로 제한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과거에 그런 제한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만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도록 제가 점심 시간까지 할애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제윤경·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동섭·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14.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희·이연주 의원 발의)
1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해영·남인순·장정숙·김병욱·박선숙·박정·윤관석·김영진·신창현·김정우·전혜숙 의원 발의)
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희·이연주 의원 발의)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신용현·김광수·박준영·김삼화·김경진·황주홍·이동섭·김종희·이연주 의원 발의)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 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임명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수, 판사, 검사, 공무원 등만 규정하고 있어 이익 대표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에 두는 협의회도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우 자진신고자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면서 자진신고자의 배상액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이 아닌 자진신고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만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자진신고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진신고자에게 연대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규정은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규정의 취지가 연대책임을 통한 손해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자진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이 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되는 내용으로 향후 입법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의 예방 정보제

공 및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법 등 입법례를 참고해서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하여 건강 관련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의 분쟁에서 조정 신청 후 조정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는 사법적 판단에 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거나 변호사로 5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갖춘 법조인 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인장보다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조정조서 작성 시에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중기준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하여 징역형 가중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50억 원을 기준으로 징역형 가중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3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경우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충민원처리소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인사청문과 관련된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그 논의를 참고하여 함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의 의견, 다시 말씀드리어서 현행법 내 다른 규정과의 충돌 우려를 제시하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심사에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3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이상 4건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10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들어가 있고 민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2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10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도 마련된 것 같은데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정무위에서 이 법 개정안을 심의하실 때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처벌을 엄중히 하되 다만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배 이내로 한정한다는 그 취지가 지금 법사위 전문위원의 의견 속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법의 집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자진신고자의 경

우에는 저희 공정위가 담합 규제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행정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에서도 일정한 정도 감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저희가 일부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 제시를 못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무위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행정처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의 경우에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10항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또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금태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가중처벌 기준을 50억에서 30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경법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2소위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리고 의사일정 16항에 대해서는 준사범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업무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2소위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15항, 16항의 제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금태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권성동** 예, 15항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최종구** 자본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사기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인 상대방이 한두명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자본시장의 신뢰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일반사기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무위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작년 초에 정우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후로 벌써 1년이 넘게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처벌조항 말고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사업자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 주셔서 이 법안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물론 급한 사정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시키려면 정무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2소위가 26일 날 예정되어 있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26일 날 우선적으로 2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양 간사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하고 16항은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예를 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은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용어인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만 부여를 해서 기망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나 협박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었어요. 왜?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의 분쟁조정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효력, 법원의 판결 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효력을 부여 안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 부분도 제2소위에 회부해서 전체 법체계를 저희들이 한번 쭉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정위 소관 법률 중에서 하도급법이나 유통 3법과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가기 전에 당사자들끼리의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로 되어 있고요.

약관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이나 다른 어떤 유통법에서도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소관 법률 전체와의 균형을 생각해 주셔서 정무위에서 의결하신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2소위에서 해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만 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은 무조건 오류가 없고 다른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건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9항에 시·도에 설치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자격에 대

해서 정무위원회가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걸 창설할 수 있나요? 이것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의견을 구해서 다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금태섭 위원** 정무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새로운 조항을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조항을 만드는 거라는 말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죄송합니다만 분쟁……

○**위원장 권성동** 잠깐 계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았는데 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장 권성동** 괜히 우리 의견만 제시해서…… 어차피 정무위에서 오케이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려보냈다가 거기서 정리해서 오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갔다 오면 어차피……

○**위원장 권성동** 정무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금태섭 위원**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놓아 주시면……

○**위원장 권성동** 예,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수석전문위원이 공문을 보내서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7항과 9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장한테 빨리 얘기해서 동의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1항, 제13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혹시 네 개 부처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여상규 위원님, 3분입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위원장 권성동 예.

○여상규 위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지정 시기가 국가의 관련 자료 관리 소홀로 뒤늦게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니까, 지정되기 전에도 사건 발생당시로 소급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현행법으로는 등록한 날짜부터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렇다면 뒤늦게 지정된 이유가 국가의 관련 기록물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상규 위원 잘 살펴보고 법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1980년 12월에 일어난 남해 대간 첩작전에 참여한 민간인이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병원이나 국방부에서 관련 의무기록이 관리 소홀로 없어서 가지고 37년이 지난 작년 7월 10일 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단 말이에요. 송효익 씨라는 분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러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이상 없으시지요?

아,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보훈처장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첫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당신이 후보시절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참가했는데 국내 3대 항일운동임에도 기념행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교육청,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회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후손자회, 동지회 등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선양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기념식 개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는,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 기념행사로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 저희가……

○박지원 위원 광주전남보훈청에서 올렸는데?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살펴본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박지원 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민주화 관련 운동에 대해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해서, 지금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3일도 국가……

○박지원 위원 11월 3일.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11월 3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기념일 지정과 함께 정부 주관으로, 대통령께서도 3대 항일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도 하겠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중소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 걸로 이것 냈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심사숙고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옛날의 시민단체 활동 할 때하고는, 바뀐 주장이라서 궁금해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장된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IPO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컨설팅 업체에서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족경영 기업이 2005년도에 비해서 약 4%나 늘었어요.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평균 약 7%, 일반기업은 6.2%로 오히려 가족경영 기업이 매출액도 늘었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경영권 보호가 안정이 됐다, 500대 기업에도. 그중에 대기업도 있고 상장기업도 다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이니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지난날, 특히 요즘 법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삼성하고 엘리트 매니지먼트의 지난번 문제 또 KT&G라든가 SK와 소버린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아픈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제나 포이즌 필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 상장이나 비상장기업에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끔, 글로벌 경영체제에 맞게끔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법무부 상법 개정안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잘……

○정갑윤 위원 옛날의 시민단체 활동 할 때 그 생각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동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권익위원장님,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에서 법제처로 옮기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김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김진태 위원 그런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에 있는데 그것을 법제처로 옮겨야 되겠다고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실제 권익위 안에 있으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위원장……

○김진태 위원 그러면 권익위에 있는 것도 부자연스러웠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독립을 시켜 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 조직 재설계안은 그 시발이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조직으로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라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김진태 위원 독립시켜 주는 게 더 그 성질에 맞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것도 이상적인 측면일 수 있으나 사실 지금 권익위 안에서는 한국으로 돼 있어서 한 70명 남짓의 인원입니다. 이 부분을……

○김진태 위원 자, 이제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법안을 내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간에 의결을 거쳤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물론입니다. 그것 의결사항입니다.

○김진태 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데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아닙니다. 당연히 이

것은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김진태 위원** 회의……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김진태 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회……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김진태 위원** 위원이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3분인데 다 얘기하면 저는 언제 얘기합니까?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까지 의결했지 그것을 법제처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 전원이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 부분은 권익위법상으로 전원위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 아, 결국 그것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네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진태 위원** 의결 안 한 겁니다. 위원들이 법제처로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요 행정심판이라는 이런 준사법적인 기능을 어떻게 법제처에다가 맡깁니까? 그러면 법제처가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 행정심판하면 법제처가 그걸 해 주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2008년 권익위로 이관되기 전에는 법제처에 있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원래 법제처에 있던 것을 권익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는데 이것을 독립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원래 있던 데로 법제처에다가 하면, 이것은 행정심판의 기능이 사법적인 것인데 거기다가 맡기면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행정심판 원리를 삼권분립 원칙을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 안에서 불량행정에 대한 정부 내에서의 최종적인 애프터서비

스를 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나중에 이것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예,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태** 갑자기 또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대리 김진태** 의사일정 제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설치 외에 관리까지를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준수의무를

부과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그 설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보완하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진태 간사,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26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대리 금태섭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 예.

지금 의사일정 제27항 공공주택 특별법……

○위원장대리 금태섭 거기 아닙니다. 26항까지입니다.

○김진태 위원 아, 거기는 아직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금태섭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요.

○위원장대리 금태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도로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의무까지 진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현재는 설치 중심인데요 관리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보완하는……

○이용주 위원 그러면 부칙에서 기준을 이 법 시행된 이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데, 또 관리 준수 의무를 규정한다는 건데 관리기준 준수도 필요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 법 시행 이후로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부분도 이 규정에 따라서 기준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지금도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자치단체의 어떤 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새로 기준이 부과되고 이르면, 그 기준에 따라 관리 부분들이 기존까지 확장되면 자치단체의 부담 등이 있어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요지가 기존에 있던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점진적으로……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정 부담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든지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기준 자체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고쳐 놓으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되고 전혀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한꺼번에 하는 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의 예산 부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기존 것까지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조항을?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이용주 위원 부칙을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기준과 달라져도 그것을 준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고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적 강제가 없게 되잖아요.

단지 법적 강제력을 부과해 놓고 국가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예산 확보 노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집행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기껏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새롭게 바뀌는 기준에 따라서 준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안 맞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그 부칙 부분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입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갑윤 위원 소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

항.

우리가 사실 최근에 제천 화재, 밀양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또 이제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소방청장 조종묵 예, 맞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거의 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요?

○소방청장 조종묵 아닙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소방안전협회에서요?

○소방청장 조종묵 예, 거기서 실무자들 다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지요? 이명박 정부 때 소방점검을 민간에 위임한 적이 있지요?

○소방청장 조종묵 전에는 소방관서에 하다가 지금은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샘플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청장 조종묵 예.

○정갑윤 위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전에 또 소홀한 게 세월호 사건 그때도 보면 선박기술연구원인가 검사원인가 인천에…… 그때 한 번 난리난 적이 있지요?

○소방청장 조종묵 예.

○정갑윤 위원 지금 그와 다를 바가 별로 없거든요.

○소방청장 조종묵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 인력을 증원해서 소방관서에서 더 많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결국 소방청이 해 주기를, 각 일선 소방서가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제대로.

○소방청장 조종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여기다 위임해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소방청장 조종묵 지금 이 부분은 소방안전협회에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 점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갑윤 위원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청장 조종묵 예, 알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소방청이 생기자마자 정말 액땀 하듯이 지금 계속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정신무장이 확실히 돼야 한다는 것, 저도 일찍 소방청이 독립하기를 바랐는데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정말 국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조종묵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24항 어떻게 할까요?

○이용주 위원 이게 보니까 원래 있던 법률안 대안으로 나와 있고, 원래 안에는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경과규정조치를 아예 삭제하는 안으로 대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서,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절한 기간으로 늘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24항을 제2소위로 넘겨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제2소위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주민 위원 경찰청차장님.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박주민 위원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수가 모두 135명입니다.

그리고 행위 태양을 보니까 좀 심한 경우들도 많아요. 동료 여경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사건도 있고, 심지어는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들킨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도 최일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경찰이 이 정도로 성폭행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위원님 말씀대로 성범죄를 단속·처벌해야 될 경찰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큰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하게 진수조사 등을 통해서 매년 적발을 하고 또 징계양정도 크게 높였습니다.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의 수하고 실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에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입건된 경찰관의 숫자는 많은데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숫자는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성매매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34명인데 이것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숫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숫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범죄행위를 범한 경찰관 숫자는 많은데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는 적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던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입건은 됐는데 기소가 되지 않거나 또는 재판 결과 무죄로 판정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소명할 자료를 내나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진짜 이 해명이 맞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겠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경찰청차장님.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김진태 위원 인공기를 태운 것은 즉각 수사를

하고 전에 성조기를 태운 것은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성조기 태운 것도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성조기 태운 것은 그때……

○경찰청차장 민갑룡 성조기 관련해서 미신고 집회 행위로 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미신고 집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성조기를 태운 것은—인공기 태운 것도 마찬가지로—현재 처벌이 곤란합니다. 미신고 집회로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관련 사항을 수사해서 송치했구요. 그다음에 인공기 관련……

○김진태 위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것 왜 처벌 안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아닙니다. 바로 수사를 해서, 수사를 다 끝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진태 위원 나중에 그것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한 것 아닙니까?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인공기 태운 것에 대해서……

인공기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인공기 태운 부분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신고 집회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정말 참 답답합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 위장평화 공세를 하고 저렇게 내려와 가지고 무슨 핵을 공갈을 치고 이러는데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국민이 모여서 인공기,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 태우는데 그것을 수사하면 국민들은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야, 이것 태우면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는구나’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지 ‘그것은 아는데 조사는 받아야 된다, 당신들은 미신고 집회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 당시에 미신고 집회하고 또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부딪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김진태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신고 집회에서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 사진 태워도 아무 문제 없는 거네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것은 저희가 위험 발생 방지 차원에서 예방과 제지를 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 발생……

그러면 아까 내가 하듯이 막 찢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위의 위험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김진태 위원** 참 말을……

그리고 지난번에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거다’ 이딴 소리는 뭐 하러 했어요? 경찰이 김정은 대리인이에요?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거예요, 김정은 사진 찢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 행위가 미치는 위험이라든가 또 불법성 정도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참 저런 식으로 넘어가고 북한 비위나 맞추려고 하고!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질의하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행안부장관, 경찰청차장께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김정은 대리인이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모독 아니에요?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을 ‘김정은 대리인이나’ 이것은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의회 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평창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 이후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첨예화돼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은 그 과정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표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북한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고 가상을 해서 미사일이라고 발사했다고 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라 강원도동계올림픽으로 전략했을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세계 분단국가에서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이, 바호 IOC 위원장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국제기구의 모든 분들이 다 칭찬하고 있는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치 전쟁이나 하자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사 주관 부처는 아니지만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 됐습니까, 전쟁 올림픽이 됐습니까? 한번 평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참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무슨 불참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상당히 극복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즉 전개되는 과정, 오늘 중반전을 넘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의 진행 양상이 체가 다른 세계인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잘 치러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 자체는 최근에 있어서 일련의 동북아시아 각국들의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우리가 이념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유치했고, 특히 보수 정권에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원해 주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나 국민들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경찰청차장님, 평소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경찰의 기획·전략통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오랫동안 업무를 맡아 왔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발표를 하면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귀속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이나 차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었어요. 그 의견의 주된 내용은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과도한 자치경찰의 권한이 되는 것이고 연방제가 아닌 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다라는 청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용주 위원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경찰개혁위에서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시민 여론과 자치단체 여론 등을 수렴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혁위 안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하나 논의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최근에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으로 논의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지방분권 하겠다. 그리고 법률을 국회에서 하지만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법률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결국 연방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까지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한다면 자치경찰에 있어서 수사권도 그런 논의로 본다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나 차장, 지도부에서 서울특별시가 말했던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연방제 수준 차원으로서 지방분권을 늘리겠다는 것과는 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자치경찰권 전체하고 자치

경찰의 수사권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안도 자치경찰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또 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된 수사권들은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안은 전체 경찰권을 넘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치안과 또 자치단체에서의 범질서 이런 부분들이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쨌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 내에서의 수사권 자치경찰에 보낼 의향은 있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과거보다는 저희가 좀 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 체계의 조정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경찰청차장 말이지요 집회 신고를 하고 북한 인공기를 태우거나 찢거나 김정일·김일성·김정은 사진을 찢거나 태우는 것 단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북한의 어떤 표장을 하는 것……

○윤상직 위원 답 빨리, 그것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가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공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지만—현재 형법 체계상—그런데 공용에 공하지 않는 부분들은 처벌이 곤란합니다.

○윤상직 위원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답을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게 왜 명확한 답변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경찰이 북한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도록 본인의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까?

이게 통일부장관 같으면 또 달라요.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뭐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똑같아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저희는 현재 형법 체계상 그 기준에 의해서 구성요건에 맞게끔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현재 공용에 공하는……

○**윤상직 위원** 아니, 경찰이 두들겨 맞아도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경찰 손도 안 대고……

길에서 찢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않잖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 말하면 본인이 그런 오명을 덮어 쓸 수 있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김진태 위원** 제가 보충……

○**백혜련 위원** 그만 좀 합시다.

○**김진태 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 1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경찰청차장님 말이에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김진태 위원** 아니, 인공기를 태우면 경찰이 무슨 소화기까지 들고 쫓아가 가지고 바로 꺼주고 성조기 태우면 그것은 신고 집회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평화공세도 좋고 남북 단일팀도 좋지만 북한이 어떤 집단이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 반국가단체 아니에요? 거기의 인공기를 태운 것은 경찰이 가서 당장 조사를 하고 우리의 우방인 동맹국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과도하다는 겁니까?

내가 참 목이 다 메네,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불에 태우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경찰청차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 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있어서 헌법상의 영장청구권과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 논의를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일차적인 수사권에 대한 행사를 경찰이 할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오신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의 시작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오신환 위원** 결과적으로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없게 됐을 경우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검사의 지휘·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현재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전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오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내면 거기에는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수사의 일차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청구권, 적어도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청구권은 경찰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공론화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민갑룡** 위원님 말씀처럼 영장……

요즘 현대사회에서 모든 기록들이 전자적이고 그런 자료를,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개시하면서 수사의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압수수색 정도의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검사한테 부여되고 있잖아요, 영장청구권?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런 절차들이, 경찰이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헌법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라고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빠지고 형소법상 입법사항으로 영장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신환 위원 개헌이 안 되면 실제로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네요, 경찰에서는?

○경찰청차장 민갑룡 저희는 신청해서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오신환 위원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경찰청차장 민갑룡 예,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게 됩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더 이상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안질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김무성·유승민·이원욱·김관영·김영우·하태경·이태규·김수민 의원 발의)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완영·조배숙·이찬열·최인호·박재호·김현권·김현아·이개호·임종성 의원 발의)

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학재·이완영·정병국·김영우 의원 발의)

3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양승조·최인호·강훈식·정성호·안규백·이석현·주승용·이훈·이원욱·김현권·전현희·제윤경 의원 발의)

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김정우·신창현·설훈·송옥주·김경협·서영교·안호영·이찬열·조승래 의원 발의)

3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김정우·주승용·한정애·신창현·윤관석·임종성·안규백·안호영·

이원욱 의원 발의)

3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전현희·최인호·박홍근·민홍철·윤관석·정성호·이준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윤호중·백재현 의원 발의)

3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7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 실태 조사 시 입주자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등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법정형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2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법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화물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등의 경우 보험이 아닌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물류 관련 신기술이나 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물류신기술지정제를 도입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요건과 지원 대상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와 그 적용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문 표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철도시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철도시설의 이력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에 비해 벌칙이 과하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과태료 사항으로 조정하는 의견과

함께 업무의 대행 규정을 보칙에 정하도록 하는 등 조문 위치를 법률 체계에 맞게 재배열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명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교통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계정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명확히 하고, 세입과 세출이 서로 연계되도록 세출에 출자 또는 용자를 규정한 경우에 세입에 그 출자 또는 용자로 인한 수입금을 규정하는 방식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현행 시설별 계정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 여부 등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6항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조문체계 정비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27항 법안은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유사 법령과 법정형 수준이 좀 편차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또 의사일정 제29항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보험 외에 공제조합 등을 거기다가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소위에 보내서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몇 항……

○김진태 위원 27·29항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30항 이 법은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 지원에 대한 지정 요건 및 지원 대상이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이것은 또 2소위에 보내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성동** 27항 법률안, 29항 법률안, 30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기……

○**위원장 권성동** 예,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일정 정도 하신다면 저도 수용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29항 도로법에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요청 기관에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 기관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만 추가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그 수정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29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27항과 30항에 대해서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오신환 위원** 34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굉장히 완화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를 어느 쪽에서 명확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기한이 18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사위에 상정돼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주요 세입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소위 회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처리 여부와 또 기재부에서의 의견 조정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34항 법률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는 의견입니다. 문제 없으면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없으면 3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보다 2소위에 넘겨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계류시키면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2소위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4항 법률안은 2소위에 회부합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31항, 32항, 33항, 3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계신데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 법사위 본회의에 새만금 특별법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춘석 위원** 이게 지금의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는 새만금 개발이 너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춘석 위원** 이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충분히 합의를 다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춘석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개발방법이 아니라 공공개발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이춘석 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이 시급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지요. 굉장히 지

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약속이니까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새만금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땅이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여기를 매립하고 개발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을 특별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길 외에는 사실상 새만금을 매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이 법을 늦추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방금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새만금을 새로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 특별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지역, 군산지역에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폐쇄되고 또 최근에 GM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전라북도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더욱더 큼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약간의 사실은 조직·체계가 중복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응적 차원에서 이 새만금을 새로운 미래도시로 건설하고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큰 뜻에 해 주셔서 하여튼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새만금법안이 전라북도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는 것도 본 위원장이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오늘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서 법안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습지만 27일 날 또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30초만 부탁 말씀……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30초만 하면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앞으로 설립하실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공사니까 해외 자본들이 있잖아요. 같이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장 권성동** 여상규 위원님 현안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장관님, 절충교역이 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모르는데요.

○**여상규 위원** 이게 우리 방위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그 무기를 사가는 국가에게 기술 이전이나 부품을 발주하게 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그런 무역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항공MRO사업이 자립기반 확충 단계를 넘어서서 전략산업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략산업으로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항공기 엔진이나 부품 등이 굉장히 기술장벽이 높은 분야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여상규 위원** 그런데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나 무기에 한해서 절충교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항기 분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항공기 엔진이나 부품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든지 우리가 다른 부속, 부품들을 발주 받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법안을…… 이게 국방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국토교통부가 유관부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 이런 민항기 분야도 절충교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답변드리기는 좀 성급하고요.

○**여상규 위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또 기왕에 시작한 MRO사업 전략산업화 그리고 또 해외시장 진출까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여상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38항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성이 약한 분쟁까지 모두 조정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등 조정의 대상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정에는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나 조직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은 대등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인 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용자인 일반 국민은 조정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면서 조정에 임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등에 비추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법률안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매자 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의 의미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범위의 정보가 해당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사용 목적을 ‘고소·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정보의 사용 목적을 불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38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통신분쟁조정위의 분쟁업무도 좀 모호합니다.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 이것도 하고 해서 이게 제2소위에 넘겨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제39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최소한의 정보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고요.

두 가지를 제2소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윤상직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 전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두 분 장관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의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제2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두 분 나와 계신데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

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욱·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

4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미혁·이학영·인재근·박홍근·이원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

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0항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4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6조의3은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된 실체적 내용이므로 조문의 배치를 총칙 부분에서 장기요양기관 부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3항, 45항~48항, 55항, 56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41항, 42항, 49항~54항,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3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55항, 제5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9항, 50항, 51항, 52항, 53항, 5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6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57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62항, 63항의 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이후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간주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58항, 59항,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번안 의결하여 회부한 법안으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60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특정 일로 정해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된 그 기원 자체가, 러시아혁명 이후에 여성의 날로 됐던 그런 유래가 있고 또 지금 다른 여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특정 일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엔의 권고안에서도 보면 그중에, 어떤 주간이나 달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 특정 일을 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여성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60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 의견인데 의견 있으십니까?

금태섭 위원님.

○금태섭 위원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김진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구 수정이나 체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데 어느 날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가위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위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성의 날을 어느 날로 정하는가 하는 것이 법체계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60항 법률안은 지난번에 법사위에 상정됐다가 여러 가지 체계·자구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여성가족위원회로 반려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다시 또 재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위원께서 문제 제기만 해 주시고, 이 법안은……

○김진태 위원 이것은 다른 쟁점인데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다른 쟁점인데,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첫 번째 상정됐을 때—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지금 뒤늦게 하는 것이 실기한 것이니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문제 제기한 것으로만 의미를 두고, 속기록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남겨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58항, 59항, 62항, 6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제6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윤영일·유성엽·이춘석·김동철·김삼화·정인화·김종희·이종걸·이용주 의원 발의)

6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서영교·김삼화·천정배·김학용·백승주·경대수·이철희·이종명·김병기·이용호·송기석·유성엽·권은희·장정숙·신용현·최경환(국)·박주선·황주홍·최도자·김종희·조배숙·장병완·김광수·이찬열·최명길·오세정·이용주·김중로·김경진·박준영·박선숙·김수민·손금주·김종대 의원 발의)

6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7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6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허가·신고, 시설기준 구비, 식품위생교육 이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허가간주제도 또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에 따라 지역여건·업무량·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등록대상이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이들에게 모두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등록의무자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재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축소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인가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단체 선거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주된 규율을 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서는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선거기간 동안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최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동 개정안의 화환·화분 제공행위 허용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인가간주제도는 다른 법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선사 요건 중 6000t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선사 수습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험을 포함하는 부분은 전형시험 요건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시행하는 도선사수습 전형시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에 대하여 세월호 인양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이미 세월호 인양작업이 완료되어 법적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어업인 피해 또는 지급·지출한 비용에도 적용됨을 부칙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에 아주 심사,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에 문제점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부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소관하는 그런 부처의 의견만을 반영한 법률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의 내용이 또 불명확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상임위의 법안 심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법사위원회의 이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법안이 제동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제68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선사가 근로자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근로자는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 근로자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파업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윤상직 위원** 파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파업을 쓰면 안 되지요. 개정안에 보면 제6조의3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파업으로 해 났어요. 개인사업자가 파업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업무 거부면 모르겠습니다. 집단적인 업무거부면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때 이 사람들의 도선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상직 위원** 아니, 지금 지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비상사태에 도선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조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윤상직 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거야말로 국가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글썄요, 다른 경우에는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따라서 재정적 보상을 해 주는데……

○**윤상직 위원** 왜 안 해 주냐 이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 경우는 도선사 자체가 굉장히 고수입 업종이고……

○**윤상직 위원** 아니, 고수익이든 아니든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너, 공짜로 해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에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

면 지금 도선사들이 정년 65세 때문에 많이 퇴직을 하니 그 사람 중 일부라도 구제해 주자는 취지 같은데, 그래서 국가필수도선사제도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 같아요. 이거야말로 국가가 공짜로 국민의 어떤 활동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8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농해수위에 반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선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필수해운제도의 한 일환으로서 도선사의 필수 적용이 필요한데 전시나…… 파업은 하나 예로 든 사항이고요. 전시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전시 같으면 다르지요. 전시 같으면 국가동원령이 떨어지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시란 말이에요, 파업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 보상도 안 해 주고 그 도선사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국가가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파업 상황은 하나 예로 든 사항이고……

○**윤상직 위원** 아니야, 지금 이야기가 두 가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희들 판단에는 전시상황에서도 모든 도선사들을 다 총동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될 필요 때문에 이 필수도선사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지금까지 도선사가 파업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파업이라는 용어가 됩니까?

뒤에 해운국장 계세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예.

○**윤상직 위원** 파업이 뭐예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위원님, 예시 규정으로서……

○**윤상직 위원** 아니, 파업이 뭐냐고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거부하는 것이지요. 업무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윤상직 위원** 아니, 도선사가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개인사업자 맞습니다.

○**윤상직 위원** 파업이 맞습니까?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이것은 예시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윤상직 위원** 예시가 맞느냐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지입차주들 있잖아요, 화물차. 그분들도 어쨌든 나중에 파업을 하게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런데 꼭……

○**윤상직 위원** 이것도 틀렸고, 두 번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합법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파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상직 위원** 아니,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럴 경우에 항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시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 규정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필수도선사로 지정되는 분들은 3년 정도 정년 연장을 해 줘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상직 위원** 그게 보상이나고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게 보상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도선사들이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윤상직 위원**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정말 정년 연장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일을 시키겠다는 것하고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비상시에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하는 약 10% 정도의 도선사들에게 3년 연장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크게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는 굉장히 위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위원님, 이것은 희망하는 도선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제가 중재 아닌 중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문위원, 이 개정안 내용에 국가필수도

선사로 지정될 경우에 도선사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연호**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규정은 없고.

그다음에 파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요?

○**전문위원 정연호** 이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는 것을 하는 건데……

○**전문위원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도선사가 개인사업자예요. 그런데 도선사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래서 그 표현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 집단적인 업무거부나 이런 식으로 바뀌야 되겠지요. 그게 불법은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위원장 권성동**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내가 일하기 싫어서 못 하겠다 하면 그건 불법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다만 집단적 업무거부를 할 경우에 그 집단적 업무거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몇 %가 동참해야 집단적 업무거부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한 10%가 업무 거부하고 30%가 업무 거부하는데 이것을 집단적이라고 볼 것인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니까 항만 가동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집단거부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윤상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위원장 권성동** 지금 법문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도 없고, 또 장관님 답변도 좀 애매모호해요,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정년연장 3년의 혜택을 줘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희망하는 도선사에 한해서.

○**위원장 권성동** 아, 도선사에 한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연장은 시키되, 그다음에 일을 시켰으면 또 일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걸 도선사협회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그 정도면 보상으로 충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희망하는 10% 정도의 도선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런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서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이 파업이라는 용어 정리를 위해서 또 집단적 거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대통령령에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제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2소위에……

○**윤상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법률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지금 65항, 67항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분이 안 계셨지요?

○**위원장 권성동** 예, 없어요. 64항, 65항도 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김진태 위원** 65항, 어떤 특정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견 어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김진태 위원** 거기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협의가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행정안전부는 원

론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마는 개별법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법에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하지만 특히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어디 조직과 기구에 관한 것이 행정안전부와 아직 협의에 이르지 않았고, 이걸 더군다나 중앙기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법에다 정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근거 법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판단하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다음에 67항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는 지금 처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64항, 65항 2개의 법률은 부처 간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7항 법률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체계의 형평성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64항, 65항, 67항, 3건의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 권성동** 뭐가 있지요?

○**김진태 위원** 66항.

○**위원장 권성동** 66항 법률안은 나도 검토보고서 보면서 의문이었는데 전문위원, 이게 쪽 이렇

게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다,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했는데, 등록의무자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석재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했는데 대통령령을 지금 넘어온 개정안처럼 동일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정연호 뭐 그런 염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처와……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제한해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2소위에 회부해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제69항, 제7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아, 68항 제외합니다. 69항, 70항 법률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주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김영춘 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남해안에 한파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양식장에 폐사들이 여러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차관이 직접 가서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희들 현재 대책은 일단 3억 원 미만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상을 하고,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결국 재난복구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재해보험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문제인데 보험을 미가입한 어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남 지역은 36%……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한파 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특약 가입이 미미합니다.

○이용주 위원 36% 정도만 가입했다고 하나까 보험을 실제로 가입하지 못한 어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 미가입 어가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여수 세계엑스포 박람회장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올해 7월, 9월, 11월 달에 걸쳐서 국제회의가 2건 그리고 국내회의 1건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엑스포 박람회장이 국제회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하나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광주·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도권, 동남권에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여수가 컨벤션 시설 등 인프라 측면에서 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엑스포재단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엑스포재단 이사장을 별도로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용주 위원 저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충분하거나 충분한 경력이 있거나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엑스포 박람회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관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 엑스포 박람회장이 사장화되지 않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가 있으니까 장관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

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용주 위원님과도 계속 상의하면서 재단의 미래나 엑스포 미래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권석창·조훈현·이종배·이양수·문진국·김진태·김명연·이채익 의원 발의)

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발의)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희·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송옥주·박정 의원 발의)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7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1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7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숙박시설 지정제를 폐지하고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적재산권자 보호 및 불법 복제물 등의 신속 차단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시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안 부칙의 경과 규정을 적용례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과 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경미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환 유예 대상을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법령 위반으로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자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이용해 사학에 관여하는 것을 제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잔여재산 귀속자 지정

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보완하고, 청산이 진행 중인 학교법인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 제2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 사항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소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 항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7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검토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35조 조항이 조금 복잡해서 그것을 자구 수정을 많이 한 것 같고.

○**전문위원 이문한** 예.

○**김진태 위원** 과연 지금 청산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거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부기돼서 왔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김진태 위원** 그래서 검토의 초점이 아무래도 소급효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일정 경우에 국고 처리하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든지 또 사학의 설립·운영의 자유 또 피해의 최소화, 법익 균형성 등 이런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네요?

○**전문위원 이문한** 그 부분도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성의 필요성 그 양쪽 균형을 입

법재량권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소급효 문제도 사실 공익성과 신뢰 보호의 양쪽 균형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 부분하고 사실상 쟁점이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소급효 부대의견이 달려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였고요. 재산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된 그 부분이 아니고 잔여재산 전체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2007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학비리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사립학교법은 법률적 판단, 법률가의 판단,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정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사학재단이 계속해서 비리와 횡령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못 하고 또 자녀 취업시키고 횡령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것을 끊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이 법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해산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이제 청산절차까지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첨부된 여러 법리적 검토에 의해도 부진정소급효는 현행법상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 있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시간이 더 소요됨으로써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법률적 주장보다는 어떤 게 정의냐, 어떤 게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맞고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게 맞느냐 하는 대승적 판단에서 아마 교문위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법사위에서도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상당 부분을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이 법은 조속히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 의견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김진태 위원 그래도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지금 헌법적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순식간에 댔습니다. 금방 검토를 하더라도 법률가라면 그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어떤 특정 사학재단의 비리가 엄청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사학을 이런 식으로까지 과잉으로 옥죄기를 한다는 것은 사학을 하는 분들을 거의 준범죄자로 보는 수준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균형이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야말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교육부장관님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김진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단서를 붙였다시피 위헌 가능성 문제를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광장 등 몇 개의 범무법인에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위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도 했고.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라는 것은 공정성과 공익

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연관성과 기능이 아주 높은 법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성을 보다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비리 중에 아시다시피 사학비리가 언제나 꼽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학생 자원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학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의 주장은 사립학교의 사유재산성과 그다음에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설립자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학교를 국가가 그냥 다 뺏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과연 헌법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고, 또 반대에서는 그런 사유재산성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서 문제 있는 사학은 전부 국가로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이어서 그것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소위로 회부해야 되는데 2소위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할 것 같아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양당 간사끼리 조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있습니까?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권성동 몇 항이지요?

○박주민 위원 75항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75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복제기기를 복제기기로 바꿈으로써 불법의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산업발전이나 이런 것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클라우드 서비스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우려하시는 문제까지를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이 개정안은 문체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top Online Piracy Act’라든지 ‘PROTECT IP Act’와 같은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결국은 인터넷 검열을 초래한다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폐기됐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문제되는 두 가지 법안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또 사법적인 판단 없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적으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지 인터넷 검열에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번 개정안은 접속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고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제재하는 말씀하신 SOPA라든가 PIPA와는 다른 형태의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포함돼 있을 우려가 있어 보이고 또 부처의 해석이 꼭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두 입법례에서도 유사하게 인터넷 검열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2소위 회부 의견입니까, 75항 법률안?

○박주민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복제뿐 아니라 전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제 행위에만 적용되는 개정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접

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봐도 정부가 사법적인 절차 없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 관련돼서도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위원장 **권성동** 박주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75항 법률안은 박주민 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잠깐 78항과 관련해서……

○위원장 **권성동** 예.

○전문위원 **이문한** 검토보고서 78항 직업교육훈련법과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이 너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행위의 사안에 따른 경중이 나뉘져 있지 않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 과태료를 다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약간 과태료를 해야 될 사항과 안 해야 할 사항을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각호에. 그런데 이 부분이 과태료 규정에 호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서 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혹시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장 **권성동** 지금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소위로 회부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금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회의에 해 주시면 다음 회의에 바로…… 가능하지요,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위원장 **권성동** 아니, 이게 지금 쪼개기 하는 것 아니에요? 쪼개 가지고 행위 태양에 따라서 과태료를 다 달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어요? 안 그러면 해당 상임위로 보내 가지고 해야지, 내용을.

○**전문위원 이문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 6개 정도 항만 꼽아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견을 지금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전문위원 이문한** 예, 전체회의에…… 저희가 그쪽 상임위 의견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논의하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오케이를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71항, 72항, 7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74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 분 나와 계십니까.

현안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문화체육부장관님, 지난번에 윤성빈 선수 금메달 딸 때 거기 나가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진태 위원** 장관님은 그 출입카드가 있습니까, AD 카드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모든 경기장에 다 들어가서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All'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카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우선 AD 카드도 없이 정치인이 그런 데 가서 얼굴 내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박영선 의원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태 위원**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박영선 의원님의 경우는 IOC의 초청 게스트로 거기에 오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 안의 피니시 라인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스키타론연맹 회장님이 문을 열어 주실 권한이 있는데……

○**김진태 위원** 아니,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분이 열어 주셔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진태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박영선 의원의 주장 내용을…… 지금 그런 것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말씀하세요.

○**김진태 위원** 그런 자리에 출입허가증도 없이 정치인이 가서 얼굴 내밀고 막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 줘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또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열어 줘야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이 특혜로 비쳐진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왜 남의 주장까지 대신 얘기를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십니까?

그분의 해명 중에 이보 페리아니 국제연맹 회장이 안내해서 들어갔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연맹 회장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내한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은 윤성빈 선수 거기 갈 때 설날 아침이고 비인기 종목이라서 손님이 많이 없을까 봐 특히 그 종목을 택해서 가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는 설날 아침에 선수들과 같이 차를 지냈고요. 그리고 모든 경기장에 금메달이 아니라 44위, 48위에 들어온 선

수들도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진태 위원** 계속 금메달이 유력한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는.

또 무슨 롱패딩 잠바 같은 것, 장관님도 그것 하나 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다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교문위원들에게 아마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교문위원이 아닌데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카드가 없는 사람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All 카드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IOC 규정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하는 친구들은 장관님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 따라가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바람에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스킨레톤국제연맹 회장님이 문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원칙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해태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IOC 규정에 의해서 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

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

8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박정·김정우·김종민·윤후덕·홍의락·정성호·이개호·윤관석·박광온 의원 발의)

8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중로·황주홍·최도자·이동섭·박주현·천정배·김삼화·김관영·유성엽·김종희 의원 발의)

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12시34분)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81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87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6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기초자본금 지원은 조합원 간 상호부조라는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81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권성동** 홍종학 장관님, 법사위에는 처음 출석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오늘 처음 출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 현안질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84항 이것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84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이 김진태 위원의 의견입니다.

○**금태섭 위원**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최근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재부 쪽의 얘기가 있고 한데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이 대규모 화재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보상액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벤처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요. 그래서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충분히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담금이 좀 부족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부처 간의 의견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네요.

우선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처음으로 출석했는데……

○**김진태 위원** 다른 법안.

○**위원장 권성동** 다른 법안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오.

○**김진태 위원** 이 87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중앙회장 피선거권 자격 관련한 것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현재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무슨 이사장들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600명이나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회원 수가 지금 607개 회원수고요, 실제로는 중앙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언제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큰 제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몇 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최소 5인 이상 발기인과 출자금 4000만 원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까지 쉬우면 그 대표자로 한정할 필요가 굳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 대표자에 소속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중소기업 대표도 가만히 있으면 회장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간단하게 조합을 설립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어떤 개혁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 후보하는 것도 지금 정관 사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런 좀 다소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87항 법률안은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5항, 8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의 법률안은 조금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82항, 83항, 8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학 장관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 가 보 훈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 찰 청 차 장
 소 방 청 장
 산 립 청 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금 융 위 원 장
 국 민 권 의 위 원 장

홍 피 류 민 조 김 이 김 최 박
 종 우 영 갑 종 재 호 상 종 은
 학 진 진 룡 목 현 성 조 구 정

○출석 위원(15인)

권 성 동	금 태 섭	김 진 태	박 범 계
박 주 민	박 지 원	백 혜 련	여 상 규
오 신 환	윤 상 직	이 용 주	이 춘 석
정 갑 윤	정 성 호	조 응 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수 철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강 병 훈
전 문 위 원	이 문 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 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영 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정 현 백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김 영 춘
해 운 물 류 국 장	엄 기 두